#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의 안 번 호

2021년 11월 2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

#### 1. 제안경위

○ 2021. 10. 28. 고병국 의원 발의 (2021. 11. 1. 회부)

#### 2. 제안이유

○ 현재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저 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을 위한 집수리 지원센터(이하 '중앙 집수리 지원센터') 를 설치・운영하고 있으나,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상 근거는 불비한 상황임. 이에 조례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관리・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제도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
# 3. 주요내용

- 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마련 (안 제11조제2항 신설).
-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(안 제11조제3항 신설).

##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개정안은 자치구의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·운영 시 예산지원 근거와, 시 장이 설치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.

## 나.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(안 제11조제2항)

○ 서울시가 운영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 외에,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지역 집 수리 지원센터는 5개뿐으로, 이 개정안은 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됨.

다만, 자치구 실정에 따라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,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자치구가 직접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집수리 지원센	제11조(집수리 지원센	제11조(
터의 설치 및 운영)	터의 설치 및 <u>운영</u> )	<u>운영 등</u> )
(생 략)	① (생 략)	① (개정안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시장은 구청장이	②
	자치구내 지역 집수	
	리 지원센터를 설치	<u>설치</u>
	·운영하는 경우 예	하거나 집수리 지원
	산의 범위 내에서 인	사무를 수행하는 경우
	건비, 운영비 등을	예산의 범위 안에서
	지원할 수 있다.	

## 다.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(안 제11조제3항)

○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이 설치하는 집수리 지원센터만 규정하고 있으나, 집수리 지원 사무는 현장밀착형으로 자치구 사무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음. 따라서 이 개정안은 시장이 설치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 외에도,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규정코자 하고.

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1.10.6.) 심의 결과, '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있으나, 센터의 위탁사무에 포함된 집 수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다'는 사유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으나1), 이 개정조례안으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.

담 당 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지현
연 락 처	02-2180-8216
이 메일	cjh1786@seoul.go.kr

<sup>1)</sup>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사무인 집수리지원센터로 시장이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, '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' 외 개별법령과 조례에도 위탁근거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. 시의회 법률자문 결과 또한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제시됨.

# 붙임

# 집수리 지원센터 추진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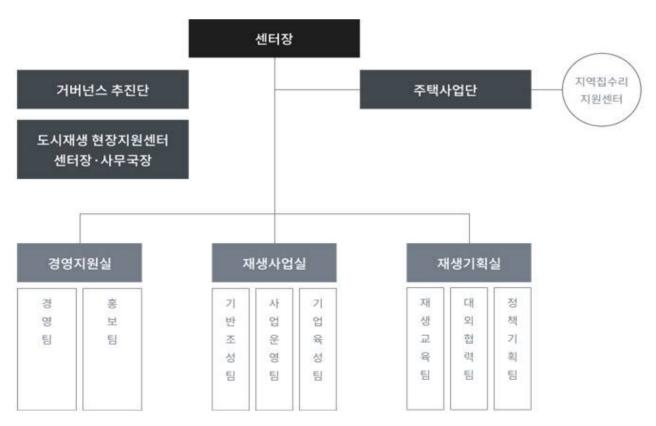
○ 운영방식 : 市 주거재생과의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내 포함

구분	중앙 센터	지역 센터
예산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: 민간사무위탁 ※ ´ 21년 기준 사업비 17,500만원	인건비 : 민간사무위탁	
	운영 및 사업비 : 자치구 집행(시비지원) ※ ^ 21년 기준 각 2,000만원	
장소	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내 설치	· 강북구, 은평구, 서대문구 :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내 설치 · 중랑구, 관약구 : 독립공간 운영

○ 위탁기관 : ㈜커런트코리아 외 1개사

○ 위탁기간 : 2022년 12월 31일까지

○ 운영조직 :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사업단



2021년도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도

#### ○ 추진근거

- `16.01.07. :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
- `18.04.30. :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

- `19.03.05. : 서울특별시 집수리 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계획

- `19.03. ~ : 중앙 집수리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

#### ○ 법적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 및 제11조

제7조(집수리 지원사업)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융자에 한한다.

4.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• 운영

제11조(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 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.